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

안양예고
교장 황 영 남
(2021.3.10)

목 차

01. 학교폭력법개정 및 시행령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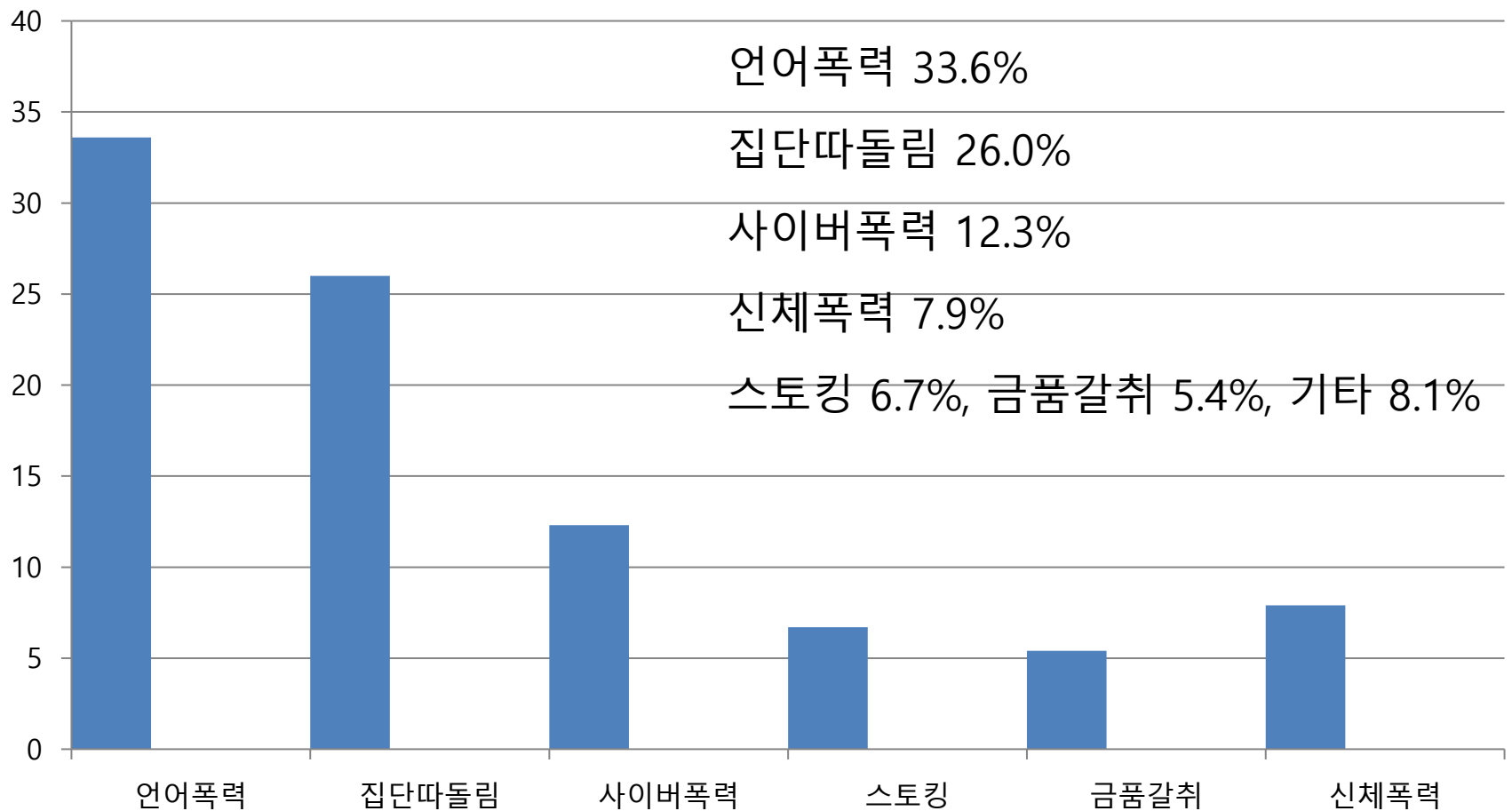
02.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

03.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

- ▷ '학교 폭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3.7. 부산일보)
- ▷ 학교폭력도 '언택트'... 더 교묘해진 사이버불링, 피할 곳이 없다(3.8. 조선일보)
- ▷ “입 찢어놓을 것” 얼굴없는 SNS 폭력... 신고조차 두렵다(3.8. 국민일보)
- ▷ “너가 내 아들 때렸어?”...학교폭력 복수한 父, 집행유예(3.6. 이데일리)
- ▷ 연예인 '학교 폭력' 사태에 가요·방송·영화까지 휘청(3.8. 아주경제)
- ▷ 코로나시대 '연결 욕구'로 SNS 활발...늘어가는 사이버폭력(3.7. YTN)
- ▷ 학교폭력, 신체폭력은 줄고 '사이버 성폭력' 늘었다(3.3. 매일신문) 등

학교폭력 피해유형(2020년,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9.8.2.) 주요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건수 증가로 교원 및 학교의 업무부담 증가

-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 확보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 설치(2020.3.1. 시행)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자치위 심의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곤란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을 학교자체 해결(2019.9.1. 시행)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절차 폐지

➡ 불복절차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이해

□ 학교폭력이란 ?

○ 학교 내·외에서(장소 무제한)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행위자 무제한)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신체적 피해 : 폭력에 의해 신체에 고통을 당한 피해 -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멍둑, 침 뱉음, 골절, 타박상, 성폭력 등
- 정신적 피해 : 정신적 고통 - 욕설, 놀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
- 재산적 피해 : 치료비, 금품갈취피해, 전자제품 갈취 피해 등

□ 학교폭력 유형(학폭법 제2조)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와이파이서플, 인터넷 배송서플, 기프티콘서플, 카톡감옥, 카톡방폭, 떼카 등)

교사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9가지 포인트

□ 사안해결의 결정적 Key는 보호자가 쥐고 있다

- 모든 업무에 우선하라.
- 혼자서 처리하지 말라.
- 교장·교감, 생활인성부장에게 즉시 보고하라.
- 교육청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라.
- 평상시에 사안 발생에 대비하라.(허점이 없도록)
- 대응에 필요한 법규를 숙지하라.(당당하게)
-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대응을 하라.
- 흥분한 학부모의 태도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할 것**
- 피해·가해학생 학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할 것

02.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

1.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 신고대장 기록 -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 관련자에게 통보(가급적 내교: 사안 설명, 진술 기회 부여)
 - 학교장 보고
 - 가/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
- ※ 객관적 사실 통보(가·피해 관련 용어 자제), 추후 진행절차 반드시 안내
초기 대응 미숙으로 대부분의 민원 발생, 결과를 예단하지 않아야 함
- ※ 실질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시작(학부모의 상황과 심정 이해, 공감 및 적극적인 해결 노력)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1.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 접수 여부는 학부모와의 타협 사항이 아니며, 접수 의미는 학교폭력 확정
상황이 아님

※ 은폐, 축소 기준이 되므로 필수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반드시 접수

(컨설팅 / 감사 지적 사례)

1.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자체 훈계, 화해로 마무리
하였다가 이후 민원이 증폭된 경우
2.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
안으로 접수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

○ 치료를 요하는 경우 신속히 응급조치

- 필요 시 119, 1339 등과 협조하여 응급조치 / 보건실 치료 시 기록 유지

○ 관련학생 신속히 분리

○ 목격·주변학생 등의 안전 확보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담임교사 개인의견 반영 엄금)

- 신고 접수사항, 치료사항, 현재 조치 사항 등 (담임교사 협조)

- '관련 학생' 이란 용어 사용

- 통보 일시, 방법(전화, 문자 등), 통보 대상(부,모 등),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교실 쉬는 시간에 가해학생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치아 2개가 측방탈구, 아탈구 상해(민원요지)

부상 정도를 보건교사가 확인하고 심각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나 미온적 대처로 30여분의 시간이 경과하게 하여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언론사 제보 등으로 민원 전개)

학교폭력의 감지 인지 노력(신고 의무)

법률 제20조(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 신고접수 & 인지
(인지 = 신고 + 목격 + 보고 + 상담 + 통보 + 언론 보도 등)
- ‘관계 기관’ : 학교폭력 책임교사 & 학교관리자
- ‘즉시’ : 통상 24시간 ~ 48시간

성폭력 사안 신고 의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1항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호 초·중·고등학교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성범죄' : 성사안
- '수사 기관' :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 '즉시' : 통상 24시간 ~ 48시간
- ❖ 절대적 신변보장 및 비밀유지 노력 - 2차 피해 방지
- ❖ 피해학생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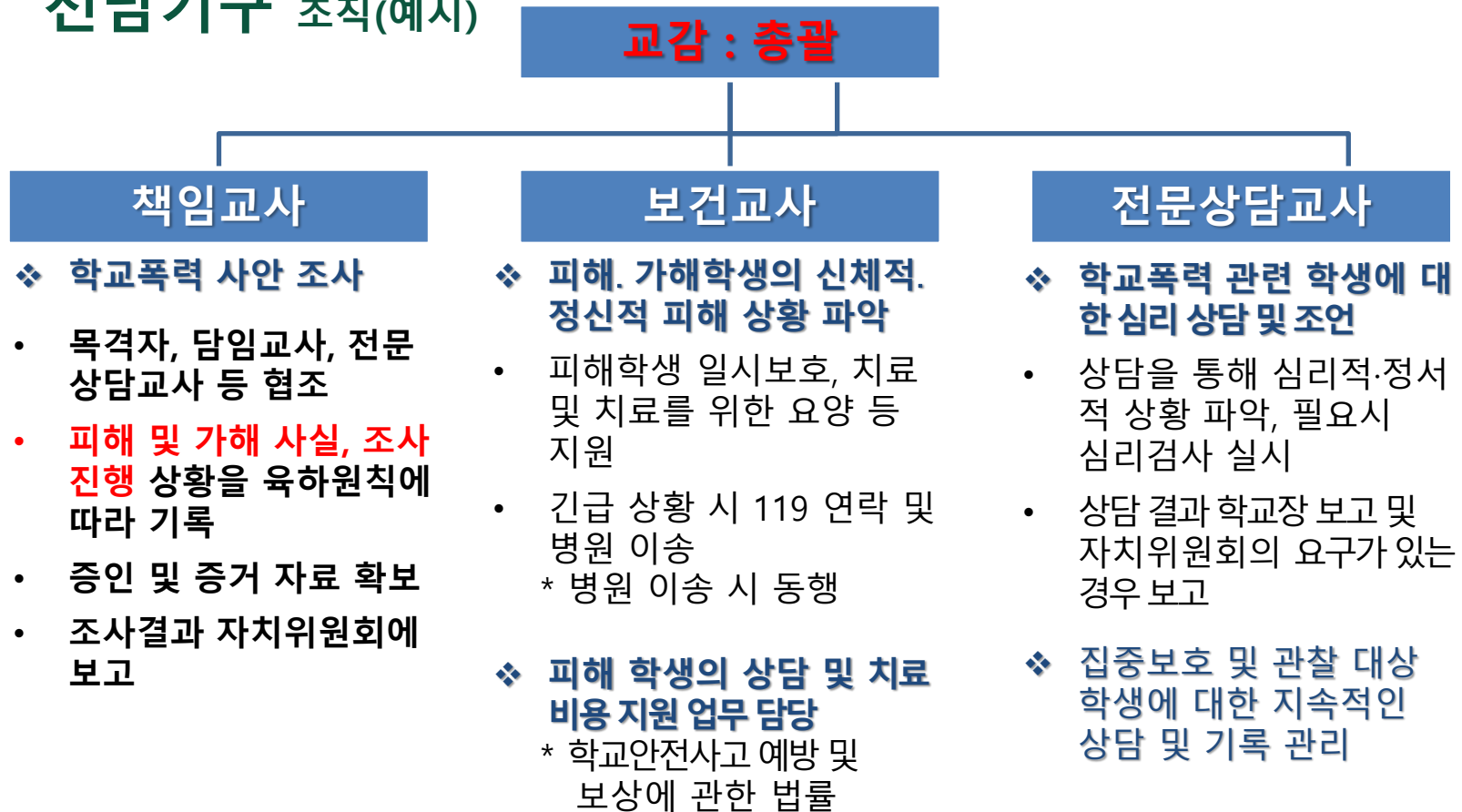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 등

- ‘아동학대범죄’ :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사 기관’ :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 ‘즉시’ : 통상 24시간 ~ 48시간

2.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조직(예시)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시 학생의 인권 보호(허용적인 분위기)

저학년, 특수교육대상자 등 조력인과 함께 조사

조사 전, 보호자에게 통지(학습권 침해 유의)

방과후, 수업시간 침해하는 조사 지양

조사시 가해학생 훈계, 비난, 평가, 심문 등 지양

학교폭력의 여부는 자치위에서 결정, 조사단계에서는 모두가 관련학생

피·가해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서 조사 지양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동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조사

진술 내용의 일관성 파악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1. 접수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견지(민원방지)
2. 학부모와 학생의 상황·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신뢰형성
3. 폭력사안 관련학생 분리조사, 축소·은폐 및 화해 중용 금지
4. 진술이 엇갈릴 경우 목격자 확인, 없을 시엔 그대로 보고
5. 초동 대응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초기 진술, CCTV 등
6.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 부득이 한 경우 보완기회 제공
7. 피해학생, 가해학생 단정하지 말고 관련학생이란 용어 사용
8.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 제공
9. 성범죄 관련 사안은 인지한 경우 예외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학부모면담 시 유의사항

관련 학생 및 학생 측 보호자 개인정보 유출 유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공개 의사를 확인 후, 통지

전담기구는 조사 기구임, 처분 결과 속단 금지

조사와 관련된 다른 학생(목격학생) 및 보호자 등 정보 유출 유의

학교가 책임을 회피한다, 좌시한다 등의 인상과 사안을 은폐,
축소한다던가 하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폭언, 폭행하는 학부모의 경우는 녹취, 증인 확보 등으로 추후 분쟁 대비

학교폭력 비밀 누설 유의

학부모 상담 시 꼭 기억해 주세요

- 논리적 설명 : 반박/화 키움
- 공감 : 흥분과 화를 감소시키는 특효약
- 학부모의 목적 : 화를 풀고자 (O)
교사를 이해하고자 (X)
- 교사/학부모 공조 : 화가 풀린 다음에나 가능함(문제해결)
대화시간... 7 (부모) : 3 (교사)

학교자체 해결(개정)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개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전담기구 심의 확인서, 피해측 학교자체해결 동의서 필수

➡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및 의결**

3. 긴급조치 : 학교장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 후, 자치위 요청 전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조치 가능
 - 긴급조치는 자치위 심의까지 효력 발휘(기간 자치위까지 명기)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 ❖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하여 조치가 유보(집행정지)된 경우, 학교장은 추가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3. 긴급조치 : 학교장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호, 2호, 3호, 5호, 6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가능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시 사전 고지 및 사후 통지하고, 학부모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님
 - 6호 출석정지의 사안 : 1.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 폭행/ 2. 전치2주 이상 상해/ 3. 보복 목적/ 4. 학교장 긴급 판단의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아야 함.
 - 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더라도 당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음.(민원 발생 가능성)

3. 긴급조치 : 학교장

-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출석정지 조치한 경우
 -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함
 - Wee 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하여 학습권 침해 논란 최소화 필요
- 출석정지 기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 일까지로 하며, 출석정지는 등교중지의 의미가 아님(자치위 추진 시 무단결석 처리)
 - 긴급조치 미이행(거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자치위 결정 미이행(거부): 자치위 개최 추가 조치 가능

4.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 피해학생 조치 사항(학폭법 제16조 1항) (학생부 미기재)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외부기관 연계 가능)

2호. 일시 보호 – 보호 또는 회복기간 명시, 출석 인정할 수 있음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 치료, 진단서 제출,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심리치료 안내

4호. 학급교체

6호. 기타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5.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사항(학폭법 제17조 1항) (학생부 기재)

1. 서면사과
2. 접촉 및 보복 금지(기간 명시, 미정 시 해당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3. 학교봉사(시간)
4. 사회봉사(시간)
5. 특별교육(시간) 또는 심리치료(회) – 택1
6. 출석정지(기간) – 무단결석 처리 ※'등교중지'의 의미가 아님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6.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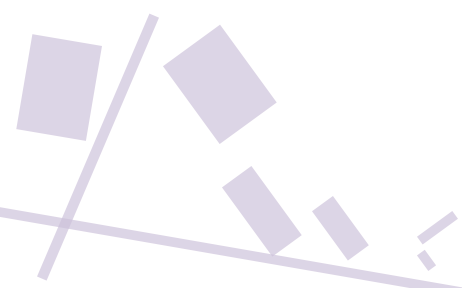
- 학교생활기록 및 관리지침 참고
- 자치위원회 결정 즉시(학교장 결재일)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기재
 - 재심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먼저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
 - 입력 일자는 최초 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결재일
- 조치사항 미이행 시 학적처리 불가
 - 가해학생 조치와 학생 특별교육 이수 후 학적(전·퇴학)처리
 -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전입학교에서 조치 이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1호, 2호, 3호,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횟수 무관)
- 4호, 5호, 6호, 8호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해당학생이 삭제 심의 신청)

단, 재학 기간 중 2회(재발, 1,2,3,7호 포함)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9/1 이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유예·면제·자퇴, 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

- 
- 기타 생활기록부 처리 내용은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
 - 이전년도 자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삭제함
 - 현재학년도 자료 :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저장하고 개인별 반영함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을 입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
[감사시 필수적으로 점검(학생부 삭제 여부)]
- 

03.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생 :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 학급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활용(가정통신문 가능)

□ 교직원 :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연수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시 대응 요령, 학생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시행령 제17조제5호)

□ 학부모 :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가정통신문 포함)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조제6호, 가정통신문 가능)

□ 기타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시 유의 사항

- 교사의 학생 폭행 사안은 징계 요구 사안임
 - 사랑의 매(×), 체벌(×), 폭언(×), 교육적 방임(×)은 학교폭력과 함께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간주 → 경찰에 신고, 형사적 처벌도 가능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성추행 등): 최소 파면/해임
 - 학교폭력 사안을 미접수하거나 성사안이나 아동학대사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 축소, 은폐 의혹 → 징계 또는 행정처분
 - 학생에 의한 교사의 피해는 학교 규칙을 정비하여 선도위원회로 처분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학교폭력은 아님)

학교폭력 어떻게 ?

1.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교권추락으로 교사의 지도력 약화
- 교직 특성상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발생시 처리 등 규정에 따른 업무 급증
- 학교폭력의 다양화 등 변화에 학교의 적절한 대응력 부족
-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긴밀한 협조 부족

2. 학교폭력은 학교와 더불어 사회가 나서야

- 학교경찰관제 도입(현행 학교전담경찰관제, 학교보안관제 대체)
- 학교폭력 처벌시 학부모 연대 책임 강화
- 상담, 치유 등을 위한 전문가의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 학교폭력 예방과 금지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감사합니다